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9. 7. 14.

사회건설위원회

1. 審 査 經 過

가. 제출일자 : 2009년 6월 24일

나. 제출자 : 신흥식 의원 외 7인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7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제14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(2009년 7월 2일) 상정 의결

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 설명자 : 신흥식 의원)

가. 제 안 이 유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체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으나, 조례 제정 이래 체육진흥협회의의 운영 실적이 전혀 없고 현재 우리 구에는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생활체육협의회가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진흥 관련활동을 실행하고 있어 별도로 체육진흥협의회를 두는 데 대한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 내용

- 1993년 12월 31일 「국민체육진흥법」이 개정되어 체육진흥협회의 설치에 관한 제5조 규정이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, 우리 구는 체육진흥협회의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함.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: 이남식)

-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990년 3월 20일 조례가 제정된 이래 영등포구체육진흥협회의 운영 실적이 없고, 현재 우리 구에는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생활체육협의회가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진흥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어 별도로 체육진흥협회를 들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,
- 이미 서울특별시와 강동구 등 12개 자치구가 이 조례를 폐지하였거나 당초에 제정하지 않은 추세 등으로 볼 때 이번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審査結課 : 原案可決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2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9년 6월 일
발 의 자 : 신 흥 식 의원의 인

1. 제안이유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체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으나, 조례 제정 이래 체육진흥협회의의 운영 실적이 전혀 없고 현재 우리 구에는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생활체육협의회가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진흥 관련활동을 실행하고 있어 별도로 체육진흥협의회를 두는 데 대한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1993년 12월 31일 「국민체육진흥법」이 개정되어 체육진흥협회의의 설치에 관한 제5조 규정이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, 우리 구는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